

#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

충청대학교와 산업체(기관) : \_\_\_\_\_ (이하“산업체<기관>”라한다)는(은) 고등교육법 제 40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계약의 목적은 산업체(기관)의 직원에 대한 교육을 충청대학교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 2 조 (위탁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)

1. 위탁교육의 과정은 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으로 한다.
2. 위탁의 모집단위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.

지 원 학 부(과)	인 원	성 명

제 3 조 (위탁생의 자격)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, 산업체(기관)에서 계속 근무 중인 자(합산경력 9개월 이상)로 한다.

제 4 조 (위탁생의 선발과 입학)

1. 위탁교육 대상자는 재직 중인 산업체(기관)에서 추천한다.
2. 충청대학교는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3.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(기관) 또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.

제 5 조 (교육과정의 편성)

1.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학과 산업체(기관)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
2.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청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.

제 6 조 (회사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) 위탁산업체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(임명)할 수 있다.

제 7 조 (교육비 및 등록) 위탁교육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해당학과 학생 납입금 수준으로 하며,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한다.

제 8 조 (학사관리)

1. 위탁교육생의 재직여부는 **년2회(2월, 8월)**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재직여부를 확인한다.
2. 본인의 원에의한 자발적 퇴직 후 3개월,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, 대학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학업유지 가능하다.

제 9 조 (위탁생의 신분)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교육생은 충청대학교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,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충 청 대 학 교 총 장



산업체(기관)명 : \_\_\_\_\_

